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5. 10.(금) 09:3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음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21-092)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9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8년 2월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관련 방통위 사무처 의견수렴 후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 18일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 26일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을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19일 사업자 의견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 4월 17일 사업자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 ~15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 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심사사항은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사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합니다.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에 3년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행점검주기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선정하여 점수대별로 차등화하였습니다. 조건부가의 경우에도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은 종전과 같이 50%로 변동이 없으나, 중점 심사사항 이외의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변경하였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의 경우에는 감점 항목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매체별 심사항목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의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등의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수렴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의결 시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및 기본계획(안) 반영 여부와 사유 등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기본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별 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제4기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근거로 크게 6개 심사 사항과 매체별 심사항목을 재검토하고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상파TV와 DMB, 종편PP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작년 말 재허가·재승인 개선안 보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임 위원들도 이달 초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방송사 임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한 의견들은 가능한 한 수용했다고 평가합니다. 방송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과락 기준을 높인 이유는 방송사업자들의 공적책임과 관리 능력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시청자 복지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과락 항목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며, 방송사들에 대한 시청자와 방통위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라 여기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높였음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상향된 기준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각 방송사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경영전략 항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전략수립이 어렵다거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영전략의 수립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영전략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방송과 경영환경 변화와 내부 역량을 감안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려 노력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경영성과는 경영전략을 잘 세웠다고 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립된 전략을 제대로 실행해 내느냐 하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실행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전략의 공개 수준도 각 방송사가 세부계획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상장회사의 대부분이 경영전략을 공개하고 주주들과 투자자 설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가운데 시청자 의견수렴 방식은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접수를 하는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중심, 시청자 중심의 능동적 방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청점유율 조사 때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사방식으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면서도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방송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재허가·재승인 사전 계획안에 담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적인 변화 의지를 잘 읽어내고 적극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성가신 제도가 아니라 방송사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성장과 발전계획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옥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하셨으니까 저는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수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과락점수를 더 높여서 강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사업자들 의견청취를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다들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락점수를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신중하게 배점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올리는 것을 혼자 반대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공정

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개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배점을 할 때 비례량 정성평가가 약 60% 정도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주관적인 자의적인 심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여권에 우호적인 분들이 더 많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심사가 공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방송사업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될 경우에 자칫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해서 또 그런 방송을 해 왔던 방송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또 심지어는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비례량 정성 평가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제로 옮겨서 중기과제 정도로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보해낼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송사업자들도 승복을 할 테고, 또 그만큼 심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기본계획의 수정안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중점 심사사항에 조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도 종편사업자나 보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중점심사항목에 대해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과락을 받을 경우에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진즉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파 사업자들이, 특히 공영방송들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중점심사항목, 예를 들어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 방송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은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라도 소위 말하는 세칭 메이저방송이라도 재허가 심사 때 중점심사항목, 방송의 공정성, 또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편파방송을 계속 할 경우에 재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경종을 울려 주는 의미에서 저는 사무처의 중점심사항목을 강화한 것을 환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고, 생각 같아서는 공영방송은 이런 공정성, 공적책임에 관한 중점심사항목을 과락을 60% 이상으로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영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새로 배점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경영전략이라고 하면 거기에 영업비밀도 있을 수 있고, 또 각 방송사업자마다 어느 점에 치중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경우에는 전략 배점을 당초 30점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다가 20점으로 낮추고 재무적 안정성에 오히려 배점을 10점 정도 더 높여서 조정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청취 결과 그렇게 조율된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종합편성채널일 경우에는 이 배점이 경영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20점으로 매겼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변동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런 부분이 일부 종편사업자들이 왜 지상파는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경영전략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점을 낮추어 줬는데 왜 여전히 종편은 경영전략을 50점으로 높이 배점을 매겼느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상파까지는 못 낮추더라도 50점에서 40점 정도로 약간 낮추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 배점을 조율할 수 없는지 제안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상파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 그리고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의가 없으며,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의견청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많은 논의를 하였고, 저는 이 안 자체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3기 때부터 방통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감한 재허가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종편들도 그렇고 지상파도 했고,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심사위원 추천단체 선정부터 해서 그 단체에서 대체로 3배수 정도 추천해 오면 거기에서 어떤 분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킬지까지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단체, 그 추천단체에서 추천한 분들 중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3기 때는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방통위원을 했지만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여권에 우호적인 심사위원 선임이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3기 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관행이었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점심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과학 제도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과학 제도라는 것이 중점심사항목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나 공적책무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국장님 그런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과학 문제 중점심사항목도 있고 중점이 아닌 것도 있고, 기존에는 중점만 50%를 과학으로 하고 나머지 중점이 아닌 것은 40% 하다가 이번에 중점이 아닌 것까지 다 50%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락제도가 있는 것이 중점심사항목입니다. 그래서 과락제도 부분은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회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에 대해 그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과락을 맞았다면 우리가 재허가 불허 그리고 재허가나 재승인을 주더라도 조건부로 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락제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부분 이런 심사를 할 때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들이 운영하는 과락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심사 시 과락제도 다 운영하고 있고, 유료방송도 마찬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락 제도는 이런 허가 심사나 인가 심사에 있어서는 통상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재승인이나 재허가 제도의 무용론이 나온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특정 사업자들은 공적책임이나 공익성·공정성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에서 매우 높은 점수로 그냥 무난하게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상파 사업자들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 재허가 불허할 수 있는 점수인 650점 미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부과하고 재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방송사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 재허가·재승인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앞으로 심사할 사업자 중에서는 어쩌면 세 번째로 재허가나 재승인 불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의 공적책무·공익성·공정성 구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심사절차를 진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무처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제가 사전 논의할 때도 한번 질문드린 것 같은데 심사점수가 650점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상파나 종편사업자들이 반대해 왔습니다. ‘규제기관의 자의성과 임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견으로 보면 수용인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과거처럼 하자는 것인데 과거처럼 했다면 우리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도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준에도 650점 미만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조건을 붙인 케이스가 있고, 650점 이상이나, 미만이냐에 따라 조건의 강도에 차이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50점 이상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형태의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썼던 부분인데 사업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행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가져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인적으로 사전 보고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650점 미만 사업자는 사실상 불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방송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허가·재승인 신청서가 불합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라도 방송을 잘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허가 불허하면 정리되지만 조건부로 재허가 할 때는 심사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이 방송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추가로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정리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용이 안 됐지만 외주상생제도 평가에 대해서 이것이 방송평가와 중복이 된다, 아니면 특정사업자의 경우 경영위기를 증폭시키고 고착시키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여년 외주제작제도가 운영되면서 솔직히 지상파들이 외주제작시장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제작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최근에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외주제작 개선대책, 이러한 것들이 조건에 안착이 되어서 외주제작 시장이 투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또 혀 옥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도 큰 골격에 대해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두 가지만 우선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관리라는 항목,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배점은 지상파 사업자들은 의견을 줘서 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수용되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런데 종편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종편 전체 4사의 의견인지….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편·보도PP 쪽에 의견을 물어봤고 그중 특정 2개사에서 지상파와 동일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재허가·재승인 업무, 또 허가 승인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심사위원장을 방통위원 또는 외부 인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통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방통위원회가 방송사업자 간의 비대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장을 방통위원이 맡아야 한다, 앞으로 상세하게 논의할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민감성을 감안해 해오던 종편과 보도전문PP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는 거둬내고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초반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할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걸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한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진 부위원장께서 중기과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고삼석 위원님께서도 중기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기준점은 650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650점에 미달했을 때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는데 구간 설정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620점이든지 600점이든지 그런 구간을 설정해서 그 미만은 아예 재허가를 거부한다, 재승인을 거부한다, 그다음에 가령 700점 이상은 어떤 권고사항도 없이 재허가·재승인을 한다, 이런 별도의 구간 설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때때마다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3회일 경우에는 아예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중기과제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업자들을 옥죄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하는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자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경영이나 또는 공익적·공공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입니다. 즉, 심사기준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까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상파는 당초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30점 부분을 20점으로 낮추어졌고, 재무적 안정성을 위하여 20점에서 30점으로 10점 배점 조정을 했는데, 왜 종편은 이것을 바꾸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종전 종편 출범 이후 또 안정적인 사업의 계획과 운영을 위해 용어만 ‘경영전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지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쪽 50점 항목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항목 자체에서 기존 종편의 경우에는 경영전략이라는 표현이 없을 뿐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향후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서 심사가 되어 왔고, 그에 비해 지상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상에서 주로 조직이나 인력 운영과 같은 관리적인 측면 위주로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저희가 안을 냈을 때 종편의 경우에 거부감이 지상파에 비해 낮았고, 지상파는 사실상 새롭게 뭔가 대단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를 강하게 했던 것이고, 종편에서는 특별히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냈습니다.

○ 허욱 상임위원

- 그런 면에서 사실상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전략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종편은 심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점수가 유지된 반면에, 지상파TV는 경영전략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서 지상파 사업자들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점을 조정하여 재무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차후에 경영전략 배점을 높인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종편PP의 경우 종전에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경영전략 및 관리실적, 계획의 적정성이 50점으로 되다가 갑자기 이 항목의 배점을 변경할 경우에 종편PP사 내부에 있어서 심사의 유불리가 갈리는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기존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심사기준의 명확화, 일관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차후라도 제대로 된 리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종전 기준의 일관성, 그리고 이 기준을 바꿈에 있어서 종편PP 내부에 있어서 유불리가 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존경하는 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상파와 달리 종편 심사 때 블라인드 심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비대칭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블라인드를 걸어내는 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재허가·재승인 심사 위원장을 내부에서 방통위원회가 맞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달리 종편·보도PP 심사 때는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위촉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에 아주 중립적인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에 방통위원 구성이 아무래도 여야 3:2 구도로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한쪽 정파 쪽을 더 많이 반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맡으시는 분이 그런 정파적 이해를 걷어내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국장님, 심사 위원장은 당장 오늘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 심사위원장 문제는 나중에 심사에 임박해서 세부심사기준 만들 때 그때 결정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게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을 정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표 위원님께서 점수 배점, 총점 650점 이하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거나 조건부로 재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재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점수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아예 방송을 폐쇄하는, 문을 닫게 하는 이런 구간을 하나 설정하는 것이 당초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것이 비계량 정성평가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이런 심사구조 때문에 자칫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계량 정성평가에서 지나치게 과락 점수를 집단으로 심사위원들께서 줄 경우에 어느 방송사 하나를 폐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언론탄압이지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놓고 마지막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점수를 설정해서 그 이하로 받으면 자동으로 바로 문을 닫게 하는 이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그런 기준 설정 자체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언론으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합니다. 누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문을 닫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탈락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부위원장님과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입장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특히 제3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할 때 재허가·재승인 심사뿐만 아니라 법정위원회 위원장들까지 저는 가급적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종편 재승인 심사,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대단히 민감하고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어떤 분이든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원칙은 상임위원들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자들의 성과와 관련된 평가인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를 하다 보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가 여기에서 보면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경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서 비계량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기준 점수로 보면 비계량평가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량평가가 통상 430점에서 440점 정도 됩니다. 사업자마다 약간 다르고, 나머지가 비계량 평가이기 때문에 560점, 570점이 비계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년 하는 방송평가는 대부분 계량평ガ입니다. 계량평가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A나 B+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계량척도를 주고 거기에 맞추면 다 통과합니다. 그런 평가와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송평가도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비계량평가 항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허가·재승인하는 그 시점에는 계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평가도 중요 하지만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께서 정성평가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공적책무를 잘했느냐,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데는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 이러한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신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제가 구간 설정을 아래위로 더 하는 것이 중기과제로 검토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똑같이 오랜 기간 언론을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단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이 650점 기준점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 아래가 나왔을 때는

방통위원회의 자의적인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 그리고 높은 쪽 두 구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600점 이런 예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600점 아래로 내려간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것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동안 사무처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체별로 의견수렴도 하는 등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함께 한두 가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업무는 방통위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중요한 업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통해 방송계 품격을 제고함으로써 더 좋은 방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지 재허가·재승인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는 그 목적에 우리의 재허가·재승인 사업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방송은 사회적 공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적책무를 수행함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이라는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 그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단순히 허가 승인기간 만료에 따른 요식행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송사업자들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특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 방송사들의 품질을, 품격을 제고하는 행위, 또 반대로 이것을 통해 방송사업자를 옥죄거나 골탕을 먹이거나 특정한 사업자를 탈락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 점에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종편들도 10년이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재허가·재승인 과정을 통해 우리 방송들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달라진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방송을 보는 눈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 스스로 향후 재허가·재승인 기간 동안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더욱 더 신뢰받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또 이런 우리의 뜻이 사업자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무처에게 준비부터 심사 전 과정에 완벽을 기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상기해서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인 만큼 심사위원회 구성 시 결격사유를 철저히 따져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시고 각 단계에서 절차를 지키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두루뭉술한 표현이 없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특정사업자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고, 또는 어떤 비판적인 언론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5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폐회 】